

2024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재공고
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「2024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」사업의 재공고를 추진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명: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
- 사업목적: 출판산업분야 혁신 기술 과제 발굴 및 지원
- 사업기간: 2024년 1월 ~ 2025년 7월

2. 지원 개요

- 지원대상: 출판사 및 출판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및 단체(컨소시엄 가능)
- 지원예산: 1개 과제당 최대 지원금 200백만원 이내
- 지원규모: 총 1개 선정 지원 ※ 지원 과제 수 및 규모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과제: 지정과제에 해당하는 과제 제안
 - 출판분야 생성형 AI 과제

예시

- AI를 활용한 홍보 카드 뉴스 제작, 이미지 제작, 표지 디자인 제작, SNS 등 홍보 영상 제작
- AI 기반 출판 산업 분야 활성화 및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 개발 등

- 디지털 교육 분야 상용화 기술 과제

예시

-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,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, 출판 교육 분야 AI 관련 기술 등

- 지원조건
 -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을 사용해야 하며, 하기 【선정 제외 대상】이 아니어야 함
 - 개발 기간(협약 체결일 ~ 2025년 6월 30일까지) 이내 개발 결과물을 완성하여야 함
 - 사업비 편성 및 집행
 - 총 사업비의 10% 이상을 수행기업(단체)이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, 예산 집행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

(예) 총 사업비 100백만 원 = 90백만 원(국고보조금) + 10백만 원(자부담금)

-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7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**참여 인력의 참여율(다른 기관 과제 참여율+진흥원 과제 참여율)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.** 대표자 및 임직원 친인척 인건비 계상 불가함
- 간담회비는 업무추진비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함
- 사업비는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) 집행 불가함
- (일반/연구개발) 용역비는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에 의해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불가하며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및 집행하여야 함

【선정 제외 대상】

-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0조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수행기업(단체)이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(단체)의 장 및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 신청기업(책임자)가 동시에 수행하는 200백만 원을 초과하는 국고 지원 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(단체)이 국고보조금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(단체)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기업(단체)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
- 상기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기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로 판단될 경우

※ 최종 선정 후 선정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·협약 해제 할 수 있음(컨소시엄 동일 적용)

【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】

① 주관부서의 장은 「보조금법」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
 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 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 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 - 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

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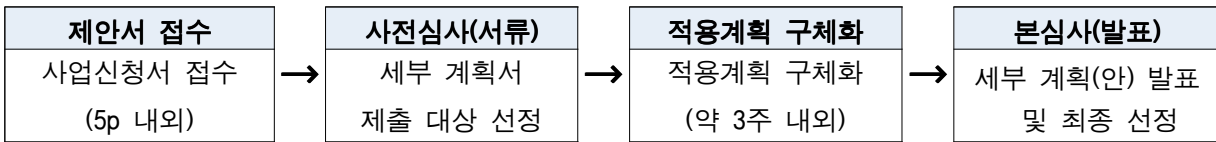
- 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 - 아.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2.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
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 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 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 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3. 보조사업자는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,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
4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
- 가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14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
 - 나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3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.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,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3. 접수 및 선정 개요

- 접수 기간: 공고일 ~ 2024.11.7.(목) 16시까지 ※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
- 사업 접수: 신청 기업(단체)당 제안서 2개까지 지원 가능, 최대 1개 과제 최종 선정
-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
 - 접수방법: 이메일(ebookbaro6@kpipa.or.kr) 접수 ※ 접수 완료 메일 회신 예정
 - 제출서류: 아래 제출 서류 ① ~ ③번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 - 과 일 명: [신청기업(단체)명] 과제명.ZIP (예시: [진흥원]AI 플랫폼 고도화.ZIP)

연번	제출 서류	제출 형식	제출 방식
①	사업신청서 (필수) *PDF, HWP 모두 제출	스캔파일 (PDF)	o 신청서 하단 직인을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* 파일명: 1. 사업신청서(신청기업(단체)명).PDF
		한글파일 (HWP)	o 신청서 하단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, 한글파일로 제출 * 파일명: 1. 사업신청서(신청기업(단체)명).HWP
②	사업제안서 (필수)	한글파일 (HWP)	o 사업제안서, 사업예산서 각 1부 * 파일명: 2. 사업제안서(신청기업(단체)명).HWP
③	별첨자료 (필수)	PDF 또는 JPG	o 폴더에 별첨 자료 번호 순 으로 사본 각 1부씩 제출 * 폴더명: 3. 별첨자료(신청기업(단체)명) * 각 파일명 3-1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3-2.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3-3. 사업자등록증

○ 선정 절차



- 사전심사: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세부 계획서 제출 대상자 선정(최종 과제 지원 수의 5배수 내외)
- 적용계획 구체화: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제안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 세부 계획(참여인력 및 컨소시엄 구성, 용역 과업 등) 마련
※ 진흥원은 기술업체 소개 및 제안하지 않으며, 전문가 자문 제공 예정
- 본심사: 사업 세부 계획(안)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

○ 선정 방법: 심사 기준(안)을 바탕으로 진흥원 「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」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○ 심사 기준(안)

- 사전심사

구분	평가 항목
개발과제 기획력(6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안 과제의 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 •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분석의 적절성 • 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
사업성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 결과물의 활용성 • 과제 결과물의 경쟁력 및 공공성

- 본심사

구분	평가 항목
개발과제의 우수성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진전략,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(핵심기술)의 우수성 • 개발 성과의 활용성(사업성)

기대성과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종 결과물 수준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• 출판산업 인프라 개선 효과 등 공공성 기여도
수행기업 역량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행기업(컨소시엄 포함) 및 참여인력 전문성 •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 등 수행관리체계 구축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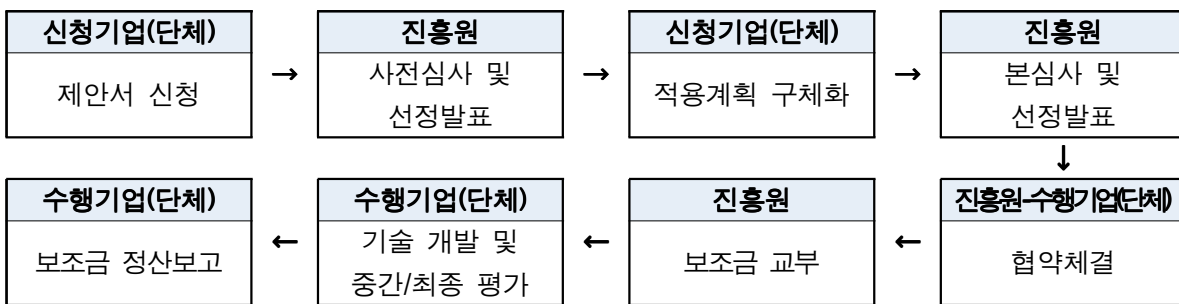
※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모집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※ 신청한 지원금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·조정을 거쳐 확정됨(단, 기 신청금에서 증액 불가)

※ 사업 포기 또는 선정 제외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

4. 추진 일정(안)

○ 사업 추진 절차



○ 추진 일정(안)

내용	일정
제안서 접수	10.25.(금) ~ 11.7.(목) 16시까지 [14일간]
사전 심사위원회 개최	11.13.(수) ~ 11.18.(월)
사전 심사 결과 발표	11.22.(금)
적용계획 구체화	11.22.(금) ~ 12.13.(금)
본심사 심사위원회 개최	12.16.(월) ~ 12.20.(금)
본심사 결과 발표	12.24.(화)
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	12.26.(목) ~ 2025년 1월
중간평가	2025년 3월 ~ 4월
최종평가	2025년 6월
사업 정산	2025년 7월

※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
5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·수행기업(단체)의 책임입니다.
-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기획재정부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」, 한국출판문화산업

진흥원 「보조금관리지침」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수행되며, 선정된 수행기업(단체)은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합니다.

- 선정된 수행기업(단체)은 진흥원과 협약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며, 이에 따른 제출서류(성희롱·성폭력 방지 준수 등)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국고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70%, 중간평가 결과 ‘통과’ 를 받은 후 30%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, 과제 특성에 따라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수행기업(단체)은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며, 진흥원은 수행기업의 e나라도움 월별 사업비 집행을 상시 점검합니다.
- 본 사업의 결과물 일부(섬네일, 성과물 표지 등)는 진흥원 또는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·전시되거나, 각종 행사 등에 전시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수행기업(단체)은 본 사업 종료 후 진흥원 요청 시 운영 실적(매출 및 이용자 수 등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6. 문의

- 미래산업팀 장혜림 주임(063-219-2757, ebookbaro6@kpipa.or.kr)

2024. 10. 25.
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